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216호

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영 규정(고시)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영 규정(고시)」 및

[별표 1] 일부개정고시 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」 및 「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기관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이용기관에 추가하고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교통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자우편 : mirthbdh@korea.kr
- 팩 스 : 044-201-3813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』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(전화 044-201-38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